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보석 금지〉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7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이해민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5. 7. 23.
3. 회부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135조 및 제136조¹⁾에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석을 하도록 하거나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편의 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6조의2(보석의 제한) 군사법원은 제135조와 제1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1)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6조(임의적 보석) 군사법원은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하되, 임의적 보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보증금을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효과를 달성하면서 피고인이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음.

□ 개정안은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모두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보석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24, 이해민 의원)이 발의되었으므로 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상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해 증거수집 등 충분한 재판준비를 함으로써 당사자 대등주의의 구현 아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석 제도의 취지, 균형법상 반란의 죄 및 이적의 죄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임의적 보석이 허가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